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3.

발 의 자 : 강득구 · 민병덕 · 채현일
김병주 · 조계원 · 박 정
임미애 · 이주희 · 강경숙
최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하나로,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이 이를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절차는 공고 · 열람 · 의견제출에 그치고 있어, 주변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생활환경상 영향, 안전 우려 등을 충분히 이해한 뒤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 주민들은 생활상 불편, 안전 우려, 주거환경 변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인 주민 설명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.

이에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,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,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의

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7조).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5항제5호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”를 “다음 각 목의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그 밖에”를 “제5항에 따른 설명회·공청회 방법 및 그 밖에”로 한다.

가. 일간신문 등을 통한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

나. 30일 이상의 발전사업 내용 공람 후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 검토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

다. 발전사업의 위치, 규모, 사업기간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설명회 개최

라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

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기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권자가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전기사업의 허가) ① ~ ④ (생 략)	제7조(전기사업의 허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⑤ ----- -----.
1. ~ 4의2. (생 략)	1. ~ 4의2. (현행과 같음)
5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, 풍력,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</u>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	5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</u> <u>목의</u> ----- ----- -----
<u><신 설></u>	<u>가. 일간신문 등을 통한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</u>
<u><신 설></u>	<u>나. 30일 이상의 발전사업 내용 공람 후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 검토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</u>
<u><신 설></u>	<u>다. 발전사업의 위치, 규모, 사업기간 및 주변지역에</u>
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6. (생 략)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 기준·절차와 <u>그 밖에</u>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 로 정한다.	<u>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설 명회 개최</u> <u>라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위의 주민이 공청회 개최 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</u> <u>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</u> 6.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<u>제5항에 따른 설명 회·공청회 방법 및 그 밖에</u>----- ----- -----.
--	---